

제조물책임의 기능

글 · 강창경 연구의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자의 구제

제조물책임은 결함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함 제품에 의한 피해의 경우, 계약 책임 또는 불법 행위 책임 등을 적용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계약관계가 있는 제품의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 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로는 결함제품을 제조한 제조자에 대한 직접 청구 또는 확대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수인이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피해의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품의 제조자가 직접 일상 소비 생활자인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은 현대 산업 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제도로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손쉽게 한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결함 제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법상의 책임 법리 특히 불법 행위 책임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판결을 하려고 하여도 현행법의 법리 구성으로는 새로운 책임 논거를 구성하는 데 무리가 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물책임의 정착은 우리 기업의 국제적 경영 활

동에 기여한다. 고도 산업 사회에 이른 오늘의 경제 실정에서 결함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정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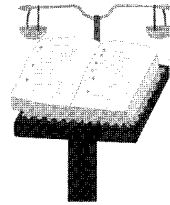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은 많은 국가의 입법 지침이 되어 대다수 유럽 국가가 이를 수용하였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국제적 동향은 소비자 보호의 수준이 국제수준으로 촉진된다는 점, 제조자 사이에 경쟁이 확보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할 경우, 그 입법 수준이나 내용은 이러한 국제 추세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나 이와 관련한 기업의 전략은 선진화가 불가피하다.

우리 기업은 선진 외국 제품의 안전성 수준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배상 제도나 위험의 예측 및 제품의 개발 전략도 새로이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발전 특히 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에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할 것이다.

기업 규제의 완화

제조물책임은 기업 스스로의 품질 경영을 정착시키고, 이에 따라 과도한 행정 간섭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는 제품의 안전성 등 품질관리를 기업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하나하나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간섭은 여러가지 이유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국민생활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 차단 장치인 행정 간섭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생각해 낸 제도이다. 앞으로 제품의 생산과 교류가 급진전되는 사회에서는 행정 규제에 한계가 올 것이고, 이는 결국 사후 구제로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물책임이 도입되면 기업의 생존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품질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안전성 등 품질 관리에 관한 행정 간섭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아직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으나, 다수의 기업은 현안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다만 막연하나마 제조물책임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제조물책임의 발전에 신중

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법의 발전으로 기업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거나, 신제품의 개발에 너무 신중하게 대처한 나머지 제품의 경쟁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기업 심리의 표현일 것이다.

물론 제조물책임이 정착되면 기업의 책임이 무거워지므로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제조물책임의 부정적인 면만을 본 것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향상되어 제조물책임이 기업에 결코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사고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 주는 등 제품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이 운용되더라도 결함 판단의 부분에서는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제조물책임법 일반

1.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제조자 등이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민사 책임을 말한다.
2.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매수인 책임주의 → 매도인 책임주의 → 제조자 책임주의로 발전한 결과이다. 따라서 결함 제품의 제조자는 새로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담되고 있는 책임을 발전시킨 것이다.
3. 제조물 책임은 계약법상의 책임인 채무 불이행 책임, 보증 책임, 하자 담보 책임과 구별되고 불법 행위 책임과도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4. 결함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는 민사 책임 이외에 형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도 지게 된다.
5. 제조물책임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절한 제도로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한편 행정규제완화에도 도움을 준다.